

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

귀하

점용구분	
점용(공사)건명	
신청기간	
조정기간	
사업시행 조건	
비고	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도로관리청

직인